



유럽법에 따른 독일의 유해폐기물 관련 법률¹⁾

정보신청기관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관리연구실

I. 유해폐기물의 정의

독일에서는 2006년 이전까지 ‘유해 폐기물 (Sonderabfall, gefährliche Abfälle)’에 관한 명확한 법적인 정의는 없었으나, 용어상의 의미로 ‘유해한 성질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라 이해하였다. 이후 2006년 7월 「재활용처리 및 폐기물 관리법 (Kreislaufwirtschaft- und Abfallgesetz - KrW-/AbfG)」²⁾의 개정으로, 독일법의 유해폐기물에 관한 개념정립이 유럽법의 기준에 맞추어 바뀌었다.

이전 법에서 ‘특정 감독이 요구되는 폐기물 (besonders überwachungsbedürftigen Abfälle)’

로 쓰이던 용어는 현재 ‘유해폐기물(gefährliche Abfälle)’로 표기되며, 그 외 모든 폐기물은 ‘비유해폐기물(nicht gefährliche Abfälle)’로 표기하고 있다.

II. 유럽법의 폐기물 표기방식의 시행

1. 유럽연합의 폐기물표기 및 유해폐기물규정의 시행

(1) 폐기물표기명령

「유럽위원회결정 2000/532/EG(EAV 2000/



1) 이 글은 독일연방환경부 홈페이지(<http://www.umweltbundesamt.de/>)를 참조하여 작성하였으며, 홈페이지 내 내용들의 최종작성은 대체로 2006년 12월을 기준으로 한다.

2) 이 법의 원래 명칭은 「재활용업과 환경보호를 위한 폐기물처리 장려에 관한 법률(Gesetzes zur Förderung der Kreislaufwirtschaft und Sicherung der umweltverträglichen Beseitigung von Abfällen (Kreislaufwirtschaft- und Abfallgesetz - KrW-/AbfG) vom 15.7.2006 (BGBl. I S. 1619))」로 1994년 9월 27일 제정되었으며(BGBl. I S. 2705), 2009년 8월 11일자에 마지막 개정이 이뤄졌다(BGBl. I S. 2723).



532/EG)」³⁾에 의거한 독일의 폐기물표기에 관한 명령인 「폐기물표기명령의 사용방법에 관한 예시: 이하 ‘폐기물표기명령’ (Hinweise zur Anwendung der Abfallverzeichnis-Verordnung vom 10. Dezember 2001, BGBl. I S. 3379: AVV)」은 이전의 유해폐기물에 관한 유럽의 입법지침들인

유해폐기물리스트(94/904/EC)⁴⁾가 포함된 유럽폐기물리스트(94/3/EC)⁵⁾가 합쳐져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폐기물표기명령」은 EU 내 회원국의 폐기물입법의 통일적 시행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소위 바젤협약)」⁶⁾의 시행 근거가 되기도 한다.

〈표1〉 폐기물리스트의 예시

상위그룹	02	농업, 정원업, 임업, 사냥터, 뉴시터 등 식재료 생산으로 인한 폐기물
하위그룹	02 01	농업, 정원업, 임업, 사냥터, 뉴시터 등에서 나온 폐기물
폐기물종류	02 01 01	빨래나 청소 등에서 나온 오물
	02 01 02	가축분뇨
	02 01 03	식물에서 나온 폐기물
폐기물재생 (Rückfallposition)	02 01 99	다른 곳에서 규정하지 않은 폐기물
유해폐기물 (Gefährlicher Abfall)	03 02 02*	염소성분으로 구성된 목재보호제 (chlororganische Holzschutzmittel)
이중기재 (Spiegeleinträgen)	02 01 08*	유해물질을 함유한 농업관련 화학폐기물
	02 01 09	02 01 08의 예외에 해당되는 유해물질 함유 농업관련 화학폐기물
	10 08 10*	발화성 있는 금속파편과 거품(Krätzen, und Abschaum, die entzündlich sind) 또는 발화성 있는 가스가 위험한 양이 상당히 분출된 액체와의 접촉
	10 08 11	10 08 10*에서 제외된 예외적인 금속파편과 거품
	06 03 15*	강철에 함유된 메탈옥사이드
	06 03 16	06 03 15에서 제외된 예외적인 메탈옥사이드



- 3) 2000/532/EG: Entscheidung der Kommission vom 3. Mai 2000 zur Ersetzung der Entscheidung 94/3/EG über ein Abfallverzeichnis gemäß Artikel 1 Buchstabe a) der Richtlinie 75/442/EWG des Rates über Abfälle und der Entscheidung 94/904/EG des Rates über ein Verzeichnis gefährlicher Abfälle im Sinne von Artikel 1 Absatz 4 der Richtlinie 91/689/EWG über gefährliche Abfälle
- 4) 94/904/EG: Entscheidung des Rates vom 22. Dezember 1994 über ein Verzeichnis gefährlicher Abfälle im Sinne von Artikel 1 Absatz 4 der Richtlinie 91/689/EWG über gefährliche Abfälle
- 5) 94/3/EG: Entscheidung der Kommission vom 20. Dezember 1993 über ein Abfallverzeichnis gemäß Artikel 1 Buchstabe a) der Richtlinie 75/442/EWG des Rates über Abfälle
- 6) Grenzüberschreitende Abfallverbringung - Verordnun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über die Verbringung von Abfällen(VVA)

(2) 분류방식

「폐기물표기명령」에서의 분류방식은 20개의 대분류와 제조과정과 원료에 따라 분류된 839종의 폐기물을 소분류로 하고 있다. 각 폐기물은 6개의 코드로 분류하고,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된 405종의 폐기물은 코드 뒤에 별 표시(*)를 하여 식별하며, 그중 「유럽폐기물표기」상 172종의 유해한 내용물 또는 성질의 함량에 따라 별도로 분류한 소

위 폐기물에 관한 ‘이중기재(Spiegelenträge)’가 있다.

유럽의 폐기물표기는 14종의 유해성에 따른 분류방식(카테고리)이 있는데, ‘이중기재(Spiegelenträgen)’를 한 리스트 내의 폐기물을 근거로 하여 확정한다. 이 유해성에 따른 분류방식은 이미 「유해물에 관한 유럽지침법 91/689」⁷⁾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다.

〈표2〉 유해물에 관한 유럽지침법 91/689

H분류방식	폐기물명령(AV) 제3조 제2항에 의거한 특징	인화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물질의 전체농도 (Gesamtkonzentration)
H3	염증이 생기는 물질(Entzündlich)	인화점 ≤ 55°C
H4	자극성 있는 물질(Reizend (R41))	≥ 10%
	자극성 있는 물질(Reizend (R36, R37, R38))	≥ 20%
H5	건강에 해로운 물질(Gesundheitsschädlich)	≥ 25%
H6	독성이 강한 물질(Sehr giftig)	≥ 0.1%
	독성이 있는 물질(Giftig)	≥ 3%
H7	암유발물질(Krebserzeugend(카테고리 1 또는 2))	≥ 0.1%
	암 유발 물질 (카테고리 3)	≥ 1%
H8	부식물질(Ätzend (R35))	≥ 1%
	부식물질(Ätzend (R34))	≥ 5%
H10	생식능력에 위험을 가져오는 물질 (Fortpflanzungsgefährdend (카테고리 1 또는 2, R60 또는 R61))	≥ 0.5%
	생식능력에 위험을 가져오는 물질 Fortpflanzungsgefährdend (카테고리 3, R62 또는 R63)	≥ 5%
H11	유전자에 변형을 가져오는 물질 (Erbgutverändernd (카테고리 1 또는 2, R46))	≥ 0.1%
	유전자에 변형을 가져오는 물질 (Erbgutverändernd (카테고리 3, R40))	≥ 1%



7) RICHTLINIE DES RATES vom 12. Dezember 1991 über gefährliche Abfälle(91/689/EWG) (ABL. L 377 vom 31.12.1991, S. 20)

Ⅲ. 유해폐기물의 처리

1. 주무관청

폐기물의 처리, 이용, 폐기는 「재활용처리 및 폐기물 관리법(KrW-/AbfG)」 제4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주(Land)의 주무관청 감독하에 이뤄진다.

또한 유해폐기물의 공급 및 양도의무(Andienungs- und Überlassungspflicht)는 주에 귀속되어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 관리업체는 우선 주무관청에 폐기물의 종류, 양 그리고 구성 물질과 처리단계의 상황에 관하여 신고하고, 이후 관청은 폐기물에 대하여 적합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2. 폐기물의 처리증명

(1) 폐기물의 처리증명과정 에 관한 명령 (Verordnung über die Nachweisführung bei der Entsorgung von Abfällen: Nachweisverordnung- NachwV)

2006년 10월 20일 새로이 제정된 「폐기물의 처리증명과정 에 관한 명령(Verordnung über die Nachweisführung bei der Entsorgung

von Abfällen: Nachweisverordnung- NachwV (BGBI. I. S. 1462))」⁸⁾에서는 실질적으로 소위 처리증명서, 인증서(Begleitscheine), 인수증서(Übernahmeschein)를 이용하여 행해지는 형식화된 폐기물의 처리 감독을 규정하고 있다.

(2) 감독방식

폐기물처리증명서를 통하여 폐기물을 방출한 자(Abfallerzeugers)와 처리하는 자 그리고 주무관청의 협력하에 규정된 처리절차에 따라 환경보호가 이뤄지는가의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사전감독).

‘증명서류를 통한 절차(Quittierungsverfahrens)’ 중에는 인증서 및 인수증서를 통해 폐기물운반의 각 단계에 관하여 폐기물처리과정의 사전감독의 시행 상황이 추가로 문서화된다(위치감독).

「처리전문업에 관한 명령(Entsorgungsfachbetriebsverordnung: EfbV(BGBI. I. S. 2247))」⁹⁾ 제14조에 의거하여 인증된 업체(이 명령 제2조)를 통해 폐기물의 처리가 이뤄지며, 개개의 감독은 각 주무관청에 의해 이뤄진다.

이 인증서 발행 절차들은 주별로 전자결제를 통해 이뤄지고(Abschnitt. 4(§§17-22) NachwV),



8) 이 명령의 원래 명칭은 「폐기물의 이용 및 폐기의 입증에 관한 명령(Verordnung über Verwertungs- und Beseitigungsnachweise (NachweisVO von 2002, in der Neufassung vom 20.10.06, BGBl. I S. 2298))」이며, 1996년 처음 제정되었으며(BGBl. I 1996, 1382(1997, 2860)), 이후 2006년 명령이 새로이 편제되며 명칭이 바뀌었다.

9) 이 명령은 1996년 9월 10일 제정되었고, 2002년 6월 24일 개정되었다. 명령의 원래 명칭은 ‘Verordnung über Entsorgungsfachbetriebe(Entsorgungsfachbetriebsverordnung - EfbV(BGBI. I. S.1421))’으로 1975년 7월 15일 제정된 유럽지침법 75/442/EWG의 이행을 위한 명령이며, 이 지침법은 1991년 3월 18일 개정되었다(개정지침법 91/156/EWG).

폐기물이 소량일 경우는 명령에 따라 규정을 간소화하고 있다(§16 NachwV). 일반 가정에서 나온 폐기물의 경우는 입증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

IV. 유해폐기물의 수집과 축적(Aufkommen und Verbleib gefährlicher Abfälle)

유해폐기물의 수집에 관련한 조사(Erhebung)는 입증절차 인증서의 평가에 의해 이뤄진다.

통계청에 신고의무는 주무관청이 진다. 내부에서 처리된 상당량의 폐기물 내지 국가 간에 이동한 폐기물(독일의 폐기물 수·출입)에는 이 절차가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다음 표는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나온 유해폐기물의 축적을 보여준다.

〈표3〉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나온 유해폐기물의 축적

단위 : 1,000t

내용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화학·물리학적 작용		1,822.6	1,826.6	1,975.2	2,331.4	2,500.3	2,473.6	2,839.5	2,705	2,951.4
연소		903.5	1,109.0	1,112.9	1,069.9	1,255.0	1,167.2	1,439.2	1,655.9	1,908.1
쓰레기매립		2,806.0	3,069.0	3,217.8	2,722.1	3,462.0	3,511.9	4,638.2	4,465.8	5,582.5
UTD		410.9	693.4	522.5	446.8	566.8	567.1	280.2	212.2	291.2
기타처리		1,255.2	2,153.0	2,396.1	3,406.2	3,178.2	3,631.8	4,292.3	4,264.4	4,842.9
사용과정		1,630.6	1,147.2	1,360.6	1,533.9	1,899.2	2,449.9	3,971.1	4,611.7	4,469.3
중간단계		857.0	811.7	787.2	857.4	1,050.4	1,162.7	1,174.6	1,355.2	1,659.9
총합계		9,685.8	10,025.2	10,584.9	11,510.2	12,861.6	13,801.5	17,460.9	19,270.2	20,045.5



10) 2006년 12월 기준으로 작성.

V. 특정유해폐기물

1. 석면이 포함된 폐기물(Asbesthaltige Abfälle)¹⁰⁾

(1) 석면의 정의

순수한 섬유질의 미네랄 그룹에 속하는 석면은 백석면(Chrysotile)과 청석면(Krokydolith)이 주로 쓰이며, 그 성질상 특수한 내열성을 가진 화학제이기 때문에 많은 종류의 물질을 만드는데 쓰인다. 일반적으로 섬유의 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그 사용에 한계를 두고 있다.

1) 섬유가 강한 석면재(Produkte mit fester Faserbindung)의 제제 규정

섬유가 강한 석면재는 특히 다량의 석면이 포함된 물질이다. 이 석면재는 예로 건설에 쓰이는 평평하거나 울퉁불퉁한 판자재 또는 건설현장에

서 폭넓게 쓰이는 관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라이닝 등과 같이 다른 제품에서도 발견된다.

2) 섬유가 약한 석면재(Produkte mit schwacher Faserbindung)의 제제 규정

가) 석면재 제제의 범위

섬유가 약한 석면재는 무엇보다 연소방지, 소음방지 또는 보온과 보습 등에 쓰이는 경량빌딩판(eichtbauplatten), 석면판(Asbestpappen), 실링프로파일(Dichtungsschnüre) 같은 섬유구성이 약한 석면으로 이뤄진 다른 물질과 스프레이 석면을 말한다.

섬유가 약한 석면물질의 경우는 석면섬유의 방출의 위험이 더 높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특히 호흡기에 영향을 주는 석면섬유는 석면폐증이 생길 수 있으며 암을 유발하는 영향력이 있다. 암유발효과로 인하여 석면은 「유해물질에 관한 명령(Gefahrstoffverordnung- GefStoffV: (BGB1. I S. 3758, 3759))」¹¹⁾에 따라 암을 유발하는 특수 위험물질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이 명령에 따르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여부는 공기 중의 석면섬유가 호흡기를 통

해 체내에 흡입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나) 화학제품금지명령(Chemikalien-Verbotsverordnung: ChemVerbotsV)에 따른 석면재 거래의 제제

석면이 들어간 물질은 「화학제품금지명령(Chemikalien-Verbotsverordnung: ChemVerbotsV)」¹²⁾에 따라 독일에서는 아주 적은 예외상황을 제외하고는 거래가 금지되고 있다. 석면이 포함된 폐기물은 폐기물표기명령에 따라 폐기물번호 17 06 05(석면이 포함된 건설자재)에 해당하여 유해폐기물로 지정되고 있다.

다) 처리절차

「화학제품법(Chemikaliengesetz)」¹³⁾ 규정의 개정(특히 위의 2005년 6월 21일 개정된 「화학제품금지명령」) 유해폐기물은 무해한 폐기물이용에 그에 관해 허용된 처리과정에 포함되며(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폐기처분될 수 없고, 새로운 사용절차에 따라야 한다.

석면폐기물은 「유해물질에 관한 명령」의 전반에 규정된(TRGS¹⁴⁾ 519와 비교) 건축물의 철거



- 11) 원래 명칭은 위험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명령「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이며, 2004년 12월 23일 제정되었으며, 2008년 12월 18일 최근 개정(BGB1. I S. 2768)되었다.
- 12) 이 명령의 원래 명칭은 「화학제품법에 따른 유해물질, 조제 그리고 생산품의 수입의 금지와 제한에 관한 명령(Verordnung über Verbote und Beschränkungen des Inverkehrbringens gefährlicher Stoffe, Zubereitungen und Erzeugnisse nach dem Chemikaliengesetz: Chemikalien-Verbotsverordnung, ChemVerbotsV)」으로, 1993년 10월 13일 제정되고, 2008년 7월 21일 최근 개정(BGB1. I S. 1328)되었다.
- 13) 법의 원래 명칭은 「유해물질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법(Gesetz zum Schutz vor gefährlichen Stoffen(Chemikaliengesetz - ChemG)」이며 1980년 9월 16일 제정되고, 2008년 7월 2일 최근 개정되었다.
- 14) 「유해물질에 관한 기술규정(Technische Regeln für Gefahrstoffe)」

및 재개발 또는 정리할 때와 주거지, 사업장에서 나온 석면제품에서 나오는 경우가 특히 많다.

석면폐기물에 관한 세부규정은 「폐기물에 관한 연방 각주의 협의회보 23호 ‘석면폐기물의 처리’ (LAGA-Mitteilung 23 “Entsorgung asbesthaltiger Abfälle”)¹⁵⁾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2. 폴리염화바이페닐이 포함된 폐기물 (Polychlorierte Biphenyle: PCB-haltige Abfälle)¹⁶⁾

(1) 폴리염화바이페닐이 포함된 제품(PCB-haltige Geräte: PCB제품)에 대한 규정

1) 폴리염화바이페닐의 정의와 위험성

PCB는 그 특성상 전자제품에서의 냉매, 기계 산업에서 유압유(Hydraulik-Flüssigkeiten), 건설 산업에서 쓰이는 열전달 유체인 하이드로플루오드에테르, 도색제, 접착제, 포장제 등 산업의 많은 분야에서 지난 50여 년간 쓰여 왔다.

폴리염화바이페닐(Polychlorierte Biphenyle: PCB)은 환경에 유해를 가져오는 재료군의 대표적인 예지만, 그 화학적·물리학적 특성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넓은 분야에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15) LAGA-Merkblatt Entsorgung asbesthaltiger Abfälle vom 6. September 1995 in der Fassung vom 20. Februar 2001(aktualisiert aufgrund der Abfallverzeichnis-Verordnung vom 10. Dezember 2001).

16) 2007년 3월 16일에 최종 개정.

17) 이 명령의 정식명칭은 ‘Verordnung über die Beschaffenheit und die Auszeichnung der Qualitäten von Kraftstoffen(10. BImSchV)’이다.

18) 이 규정의 원래 명칭은 ‘Richtlinie 85/467/EWG des Rates vom 1. Oktober 1985 zur sechsten Änderung (PCB/PCT) der

2) 폴리염화바이페닐의 제제

PCB의 공개 사용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유해력은 굉장히 늦게 알려졌기 때문에, 이전의 산업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지던 감독에 대한 규정이 유해력이 알려진 이후에는 이용의 제한과 폐기를 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독일에서는 1983년에 폴리염화테르페닐(polychlorierte Terphenyle: PCT) 제품생산이 영구히 중지되었고, PCT제품의 경우는 이미 1974년에, 중·고염화바이페닐제품(der hoch- und mittelchlorierten PCB)은 1980년 후반에, 고염화바이페닐(höchstchlorierten PCB)의 경우는 1977년에 제품생산이 중단되었다.

3) 폴리염화바이페닐의 수입과 사용의 제제

법적으로는 이미 1978년에 「연방공해방지법의 시행을 위한 제10차 명령(Zehnten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Bundes-Immissionsschutzgesetz)¹⁷⁾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PCB의 국내로의 수입이 금지되었다.

1984년에 PCB는 독일에서 더 이상 전자제품군에 쓰일 수 없게 되었으며, 1985년 제정된 유럽지침법 85/467/EWG(die EG-Richtlinie 85/467/EWG)¹⁸⁾에 의하여 독일에는 1989년 「폴

리염화바이페닐금지명령」이 시행되었고 1993년 PCB금지명령 규정이 새로이 정비되어 화학제품의 금지규정으로 자리 잡았다.

(2) EU의 입법지침과 그에 따른 독일의 명령 규정¹⁹⁾

1996년 제정된 「폴리염화바이페닐과 폴리염화방향제탄화수소화합물의 처리에 관한 유럽지침법 96/59/EG(Die Richtlinie 96/59/EG des Rates vom 16. September 1996 über die Beseitigung polychlorierter Biphenyle und polychlorierter Terphenyle(PCB / PCT))」는 5dm³(5리터) 이상의 PCB가 있는 물질의 사용

을 일반적으로 제재하고 있으며, 그밖에 이 입법지침에서는 PCB중 폴리염화디페닐메탄(PCDM) 및 총합이 50mg/kg 이상인 각 혼합물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다.

2004년에 나온 「지속적이며 유기적인 유해물질에 관한 유럽연합명령 Nr. 805/2004(소위 POP-명령)」²⁰⁾에 따라 PCB도 금지물질에 속하게 되었다.

1리터 이상의 PCB가 함유된 액체가 들어간 기기의 운용은 독일에서 1993년 개정된 「유해물질에 관한 명령(Gefahrstoffverordnung)」에 의하여 2000년부터 사용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Richtlinie 76/769/EWG zur Angleichung der Rechts- und Verwaltungsvorschriften der Mitgliedstaaten für Beschränkungen des Inverkehrbringens und der Verwendung gewisser gefährlicher Stoffe und Zubereitungen' 이다.

19) 관련 규정

- Verordnung zum Verbot von polychlorierten Biphenylen, polychlorierten Terphenylen und zur Beschränkung von Vinylchlorid (PCB-, PCT-, VC- Verbotverordnung) vom 18.Juli 1989.
- LAGA-Merkblatt: Entsorgung von PCB-haltigen Reststoffen und Abfällen Mitteilung der Länderarbeitsgemeinschaft Abfall (LAGA) Nr. 24 vom Februar 1992.
- Richtlinie 96/59/EG des Rates vom 16. September 1996 über die Beseitigung polychlorierter Biphenyle und polychlorierter Terphenyle (PCB/PCT).
- Verordnung über Verbot und Beschränkungen des Inverkehrbringens gefährlicher Stoffe, Zubereitungen und Erzeugnisse nach dem Chemikaliengesetz (Chemikalien-Verbotsverordnung - ChemVerbotsV) zuletzt geändert am 26. Juni 2000.
- Verordnung über die Entsorgung polychlorierter Biphenyle, polychlorierter Terphenyle und halogenerter Monomethyldiphenylmethane (PCB/PCT-Abfallverordnung - PCBAbfallV) vom 26. Juni 2000.
- Verordnung zum Schutz vor gefährlichen Stoffen (Gefahrstoffverordnung - GefStoffV), zuletzt geändert am 20. Juli 2000.
- Stockholmer Übereinkommen über Persistente Organische Schadstoffe Stockholm, 22./23. Mai 2001 (in Kraft seit 17. Mai 2004).
- Verordnung (EG) Nr. 850/2004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29. April 2004 über persistente organische Schadstoffe und zur Änderung der Richtlinie 79/117/EWG (in Kraft seit 20. Mai 2004).
- Technical guidelines for environmentally sound management of wastes consisting of, containing or contaminated with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polychlorinated terphenyls (PCTs) or polybrominated biphenyls (PBBs), angenommen auf der 7. Vertragsstaatenkonferenz des Basler Übereinkommens im Oktober 2004.

20) der EG-Verordnung Nr. 850/2004 von 29. April 2004 über persistente organische Schadstoffe (sog. POP-Verordnung).

그러나 「유해물질에 관한 명령」 제43조에 의하여 1999년 12월 31일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 이런 기기의 사용은 이후에 2010년까지 사용이 연장되었다

(3) 처리절차(Entsorgungsverfahren)

독일은 PCB가 들어간 폐기물의 경우 소각 혹은 폐기처분하는데 자격요건이 충분한 곳에 그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PCB를 함유한 기기의 처리는 각 연방주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

우선 PCB를 함유의 여부와 관계없이 1단계에서 처분하는 경우와 전자제품의 처리는 액체 등에 PCB 포함 정도에 따른다.

수 있게 된다는 것과 결과적으로 환경에 이로운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 연방 환경부는 예상하고 있다.

연방 및 주의 통합된 중앙 화합물 데이터풀(Der gemeinsame zentrale Stoffdatenpool des Bundes und der Länder: GSBL)에는 약 6만여 종의 순수한 화합물(Reinstoff)과 32만 5,000종의 물리·화학 및 독성물질기준에 부합하는 화합물에 관한 리스트가 올라와 있어, 환경 보호, 소비자 보호와 유해물질로 인한 재앙 및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VI. 유럽과 독일 차원에서 폐기물에 대한 대응과 데이터의 조성

EU 차원에서는 2006년 10월 환경위원회 회원인 Starcros Diamas가 Elfenbeinküste에서 발생한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람의 사망사건을 예로 들어, 국경을 초월하여 유해폐기물에 의한 사고로 인한 사람의 사망 혹은 상해에 관하여는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독일의 경우 2009년 5월 28일부터 화합물에 관련된 종합 데이터를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유해물질에 관한 지식체계를 확충하고, 재정 낭비를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방서와 경찰이 통합된 데이터 접근통로를 가짐으로서 유해물질로 인한 불행한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얻을

조희원
(한국법제연구원 인턴연구원)